

## ■ 판례 동향

진공펌프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

## ■ 품목분류 동향

볶은 커피 대용물의  
품목분류

---

## ■ 개정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 산업 활성화로 국내 공급 기반 마련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최흥식

총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5년 3월 31일(통권 제2124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를 통한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C O N T E N T S

---

## 이주의 초점

- 04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 산업 활성화로 국내 공급 기반 마련

---

## 06 Weekly News

---

### 관세행정실무해설

- 18 관세행정안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부가가치비율 작성 방법
- 26 질의응답사례  
수출입물품 검사로 인한 물품 손실

---

### 판례동향

- 29 관세판례해설  
진공펌프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

### 품목분류동향

- 38 품목분류해설  
볶은 커피 대용물의 품목분류

---

## 43 품목분류 M.A.P

대두레시틴 분류 사례

## 47 세번 바로잡기

장갑 부분품

## 50 상식 밖의 상품학

전자 혈압계

---

## 최신개정법령

## 52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56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77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계획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계획

---

##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 산업 활성화로 국내 공급 기반 마련

정부,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 목표로 관련 산업 활성화 계획 발표

전기차·이차전지·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필수 요소인 핵심광물을 사용 후 제품으로부터 추출하는 재자원화 산업이 본격 육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세계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작년 2,00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1,000억 달러로 5배 확대될 전망이다. 2031년부터 유럽연합(EU)으로 배터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배터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래 유망시장 선점과 글로벌 기후변화·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미국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생산시설 직접투자를 비롯해 용자와 보증 지원 및 재자원화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중국은 정부와 국영기업 주도로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 배터리 등 재자원화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남아메리카 등과 양자 협력을 확대 중이다.

EU는 재자원화 의무사용비율과 생산목표 등 산업 육성을 제도화하고 재자원화 프로젝트, 기술개발 등 투자·용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또한 재자원화 산업 투자·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동남아시아 등 해외 원료 확보와 기술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재자원화 산업 현황은 재자원화 기업 중 80%가 종업원 20인 미만 소규모 업체로 산업 기반이 취약해 국내·외 원료 확보가 어렵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산업분류 등 통계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관련 산업 현황 파악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개 주요 정책과제 추진을 통해 국내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원료·제품 성분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간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해외 원료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고, 사용 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행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와 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재자원화 시설과 장비 구축,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금속·산화물 등 재자원화 제품 비축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해 나간다.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광물안보파트너십 등 글로벌 다자협업체 활용 및 EU와 일본 등 주요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교류와 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원료의 유통과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유해성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해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절차 간소화 및 수입비용 부담 경감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 확대,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와 범부처 TF를 운영해 제도개선 과제 및 신규 지원시책 등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산업분류체계 개발로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산업실태조사 및 핵심 통계지표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통계시스템을 정비한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국내 새로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해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산업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 국내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2030년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
-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 재자원화 원료 공급 안정화	-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 재자원화 원시스템 강화	- 재자원화 원료 유통규제 완화  - 재자원화 원료 수입부담 경감	- 재자원화 추진체계 구축  - 재자원화 통계시스템 정비

##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 분류 … 기본세율 2%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서 17건 품목분류 결정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되면서 이를 수입해 재자원화하는 기업의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블랙매스', '블랙파우더'로 불리는 검정 분말로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다.

관세청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포함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해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의 유가금속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 쟁점물품 ●



\* 블랙매스

\*\* 블랙파우더

\* 재사용이 불가능한 리튬이온전지와 셀 제조과정 부적합품을 전처리 공정을 통해 얻은 검정 분말

\*\* 제조과정 중 발생한 부적합 전극체, 부적합 활물질, 부적합 전극을 파·분쇄해 선별한 검정 분말

배터리 재활용 공정은 제조과정 부적합품과 재사용이 불가한 배터리를 분말 형태로 회수하는 전처리 공정과 블랙파우더 또는 블랙매스에 함유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후처리 공정으로 구분된다. 이번 결정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내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춘 조치”라고 전했다.

이로써 기존에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수입할 때 '전기·전자 폐기물'로 8%의 세율을 적용받았던 기업들은 향후 2%의 세율이 되면 관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에 쓰이는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이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해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으로 침은 봉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된다”며,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므로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은 이번 호 최신 개정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

연번	대상물품	결정 세번
1	레이더 골프용품	제8526.10-9000호(양허세율 0%)
2	Cobalt acetylacetonate	제2914.19-0000호(양허세율 5.5%)
3	돈코츠 라멘 스프 등	제2104.10-1000호(기본세율 18%)
4	Denkacare Vitalvit	제2309.90-1099호(기본세율 5%)
5	대두 유박	제2304.00-0000호(양허세율 1.8%)
6	핫케이크	제1905.90-1030호(기본세율 8%)
7	돼지감자 차 티백	제2101.30-9000호(기본세율 8%)
8	배터리 파우더	제2620.99-0000호(기본세율 2%)
9	블랙매스, 블랙파우더	제2620.99-0000호(기본세율 2%)
10	분리수거용 백(bag)	제3924.90-9000호(양허세율 6.5%)
11	의료용 살균한 봉합사	제3006.10-1020호(양허세율 0%)
12	블라인드 bottom bar end cap	제3925.30-0000호(양허세율 6.5%)
13	블라인드 end cap	제3925.30-0000호(양허세율 6.5%)
14	알까닭 등 완구	제9503.00-3700호(기본세율 8%)
15	엘리베이터용 벨트	제7312.10-2099호(양허세율 0%)
16	CALCIUM SILICON CORED WIRE	제7202.99-9000호(기본세율 3%)
17-1	참깨 바*	제1704.90-9000호(기본세율 8%)
17-2	캐러멜 팝콘*	제1704.90-9000호(기본세율 8%)
17-3	착채*	제2005.99-9000호(기본세율 20%)
17-4	냉동한 미성숙한 대두*	제1201.90-9000호(양허세율 487%)
17-5	긴소매 남녀공용 아웃터 의류*	제6102.30-1000호(기본세율 13%)
17-6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	제7007.11-1000호(기본세율 8%)
17-7	스프레이 디스펜서*	제8424.89-9000호(기본세율 8%)

\*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 결정 및 HS품목분류의견서 국내 수용에 따른 변경 대상 물품

## 美 상호관세 대비 관세리스크 점검 '특별대응본부' 출범

###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수사 진행 및 기업지원단 운영

트럼프 美 대통령이 4월 2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관세청은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했다.

관세청은 상호관세와 관련해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대응본부에는 본부장 산하에 3개 하위조직(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이 배치된다. 우선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태양광셀, 전기차 배터리 부품, 흑연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위험점검단은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검증한다.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美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지원단을 운영한다.

기업지원단은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을 비롯한 현지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4월 2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특별대응본부로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대응전략을 세우고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이 특별대응본부 출범식을 3월 27일 진행했다(출처 : 관세청)

## 과세가격 제도 개편, 성실 기업엔 혜택·미이행 기업은 제재 강화

###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및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 간담회 개최

앞으로 과세가격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은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제출 대상 과세자료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한편 동일 반복 신고 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반면 제도를 미이행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3월 25일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과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대부분 수입 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관세법」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 할 때 물품의 가격에 대해 신고하고 과세가격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원활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납세자의 신고 편의 증진을 통해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제출이 용이하도록 제출 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동일한 반복 신고 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수입통관 시점에 성실하게 가격신고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등 사후심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고, 신고오류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납세오류 치유 및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신고 사항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개선하고 확대 시행한다.

세관이 납세자의 수입신고 내용 중 오류가 예상되는 사항을 기업에 알려주고 기업이 오류를 자발적으로 점검해 정정하도록 한 후,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 세액심사하고, 탈세 위험이 감지되면 관세조사까지 시행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입 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관세청 손승수 심사국장은 “기업의 신고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확인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확보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 대형산불 피해 기업에 수입물품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시민들의 피해가 큰 가운데, 관세청은 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이다.

우선 세정지원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는 생략된다. 공장·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기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를 유예한다.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은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FTA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 기업은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한다. 협정 상대국이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경우는 상대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대형산불 피해 이후 긴급 조달이 필요한 원부자재, 특별재난지역 지원물품은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였던 것을 '1년 범위 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기존에는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30일을 경과해 수입신고 하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가산세가 부과됐다. 대형산불과 관련된 피해 사실 접수와 지원 내용은 전국 24개 세관에 문의하면 된다.

## 韓·英 AEO MRA 4월 1일 발효 ... 韓 기업 영국서 AEO 혜택 누린다

작년 6월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4월 1일 발효된다.

3월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AEO로 인정해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인 AEO MRA가 발효돼 우리 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토대로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이에 따라 AEO 업체는 수출 절차상 특별한 조치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호주, 태국 등 25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으며, 그중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 5개국은 MRA 체결 후 발효 준비 중이다.

| 김성은 기자 |

## 중국産 불로초, 수입 건마다 잔류농약 검사 의무화

3월 31일부터 중국産 불로초(영지버섯)의 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가 잔류농약 검사에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 대상에 포함된다고 3월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중국産 불로초 통관검사에서 잔류농약이 반복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해당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에 포함했다.

검사명령 대상이 되면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할 때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産 불로초는 반입 건마다 검사기관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적합)를 제출해야 수입신고가 허용된다.

시행일자	대상 식품	국가	검사 항목
2025. 3. 31. ~2026. 3. 30.	불로초	중국	잔류농약 15종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플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

## 화장품 성분·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 외부 포장에 표기해야

앞으로 화장품의 용량,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기재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1일 올해 2월 화장품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안내했다.

포장이나 용기 바깥면에 기재돼야 하는 주요 표시사항은 ▲화장품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이다. 외부 포장 전부가 투명하거나 일부 면이 투명·개방돼 있어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도안·글씨 등이 투명 포장 위에 기재되거나 외부 포장의 굴곡으로 글씨가 굴절되는 등 모든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판촉 행사 등을 목적으로 개별로 판매되는 제품을 묶음 형태로 판매할 경우 묶음용 필름·시트가 접착제 등으로 제품에 직접 부착되거나 고정돼 외부 포장의 기재사항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의 경우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성은 기자 |

## “미국에 고구마·중국에 단감” 올해 수출검역 우선 협상

### 농식품부, 11개 수출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올해 농식품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으로 딸기, 쇠고기, 반려동물 사료 등 11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추진품목은 상대국과 검역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6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 선정된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은 농산물 6개 품목(6개국), 축산물 5개 품목(7개국)이다. 농산물에서는 맛, 신선도 등 품질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고구마(미국), 포도(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감귤·키위(베트남), 딸기(튀르키예)가 선정돼 해외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또한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이 더딘 단감(중국)도 중점 품목으로 선정됐다.

축산물에서는 한우 수출시장을 신규로 개척하기 위해 싱가포르·베트남을 주요 협상국으로 선정했다. 국내 가축질병 발생에도 수출 중단 영향이 적은 열처리 축산물은 미국·호주·중국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발맞춰 싱가포르·남아프리카공화국에 반려동물 사료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 ● 2025년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

구분	국가	품목	구분	국가	품목	
농산물 (6개국, 6개 품목)	협상 중 품목	미국	축산물 (7개국, 5개 품목)	미국	열처리 돼지고기· 쇠고기	
		베트남		싱가포르	쇠고기	
				키위	베트남	열처리 가금육
		중국		단감	중국	열처리 돼지고기
		필리핀		포도	필리핀	열처리 돼지고기
	신규 품목	튀르키예		딸기	호주	열처리 가금육
		우즈베키스탄		포도	남아공	반려동물 사료
					베트남	쇠고기
	싱가포르	반려동물 사료				

출처 : 농식품부

이번 회의를 통해 선정된 중점추진품목들은 관련 기관, 단체 및 재외 공관 등과 공유하고, 국가별로 추진하는 검역협상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지도록 상대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정기점검으로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품목별 수출협의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5개 국가와 7개 농식품에 대한 검역협상을 최종 타결한 점 등 전년도 수출검역 협상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 김성은 기자 |

## 日, 중국産 흑연전극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우리 기업에 호재 될 수도

### 日 수출 위해선 장기적 전략수립·지속적 경쟁력 확보·공급망 정세 모니터링 필요

일본정부가 중국産 흑연전극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임시 적용하기로 하자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울 경우 한국 기업에 수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정부가 중국産 흑연전극 제품에 대해 3월 29일부터 4개월간 반덤핑 관세를 임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NHK는 3월 25일 보도했다.

반덤핑 관세 대상품목인 흑연전극 HS Code는 제8545.11호로, 흑연화 처리를 거쳐 강철 스크랩 용해용 전기 아크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봉 형태의 흑연전극이다. 특히 철강 제조업체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고로 생산 방식에서 전기로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며 흑연전극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오사카무역관에 따르면, 일본의 중국産 흑연전극 제품 수입량이 2018년 1만 1,400톤에서 2023년 1만 3,000톤으로 14% 증가해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업체의 매출액은 2018년 대비 5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6% 수준까지 하락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생산동태통계에 따르면, 일본 내 인조 흑연전극의 출하단가는 작년 12월 기준 783엔/kg인 반면,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흑연전극 제품 수입단가(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자료)는 392엔/kg이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일본 도카이카 본사는 2025년 7월 말부로 시가현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본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중국産 흑연전극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조사 시작 후 60일 이후에 과세가 가능한 '임시 불공정 덤핑 관세' 트랙으로 분류돼 일본정부가 신속히 대응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일본정부의 중국産 흑연전극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으로 그동안 중국 기업들의 저가 물량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일본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가격을 올려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인상된 가격에 따른 일본기업의 신규 수입선 확보 수요가 늘 수 있다고 오사카무역관은 전망했다.

오사카무역관은 "일본 카본업계는 오랜 기간 친환경 전기로용 흑연전극 개발에 공을 들였으나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대량 수입을 하면서 피해를 봤다"며, "중국産 흑연 반덤핑 부과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인 공급망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카본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과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 ▲공급망 정세 모니터링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일본 종합상사 철강제품 담당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 하구현 기자 |

## 美 정부 자동차 25% 관세 부과 발표 ··· 우리 비상대책은 4월 중 나온다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자동차부품은 5월 3일 이전 관세 부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우리 자동차 수출 시장의 1위 국가인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3월 26일 美 정부는 포고령을 통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자동차는 4월 3일(현지시간)부터, 자동차부품은 5월 3일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게 할 위험이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했다”며,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게 하지 않도록 수입을 조정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美 백악관에 따르면, 작년 미국인들이 약 1,600만 대의 승용차, SUV, 경량 트럭을 구매했으며, 이 중 50%(800만 대)가 수입차였다. 같은 해 자동차부품 무역 적자는 935억 달러였다.

관세 부과 대상은 세단·미니밴 등 승용차, 경량 트럭 및 엔진·엔진 부품·변속기(transmission)·파워트레인 부품·전자 부품 등 자동차부품이다.

관세 적용 예외도 있는데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수입된 자동차·자동차부품의 미국産 비율 인증 시 非미국産 부품 비중에 대해서만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부품의 경우 절차 확인 전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美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對美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 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 ●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발표(3.26.) 주요 내용 ●

구분	자동차	자동차부품
대상	승용차 및 경량 트럭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 부품 (세부 목록 추후 발표)
부과 시기	4. 3.	5. 3. (추후 연방관보에 시행일 게재 예정)
예외	USMCA 총족 차량에 대해서는 非미국産 비중에 대해서만 관세	USMCA 총족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적용 절차 수립 시까지 관세 유예 * 절차 수립 후 자동차와 같은 방식으로 非미국産 비중에 대해서만 관세

## 따로 또 같은 美·EU 그린정책, 정책방향 읽어야 기회 올 것

韓, 온실가스 감축 등 '규제'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성장' 지원으로 전환해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반된 그린성장 노선을 그리고 있지만, 양쪽 모두 에너지 안보 및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도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월 24일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화석연료 중심의 반 그린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EU는 그린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최근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한, 그린뉴딜 폐기, 배출가스 기준 완화 및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이는 미국이 가진 글로벌 기후 리더십이 축소되더라도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에 더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고서는 풀이했다.

또한 청정경쟁법(CCA)을 활용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수입품목에 '탄소세' 부과도 검토 중인데, 친환경 관점보다는 자국의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차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과는 반대로 EU는 기존에 추구하던 그린딜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규제 기준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발표된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그동안 기업의 부담으로 지적되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정책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그린 전략이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략산업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성에 따라 발생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 양 지역 모두가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천연가스 확보 관련 LNG 운반 선박, 터미널·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이 화석연료로 회귀하면서 석유화학 플랜트도 사업 기회 확대와 필수소비재의 경우 친환경 규제 완화와 기업의 ESG 부담이 일시적으로 경감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박소영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앞다퉈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하구현 기자 |

## 해상 국제이사화물 통관 7일 → 2일로 빨라진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 공사 착공식 개최, 내년 8월 준공 예정

국제이사화물 물동량 처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가 증축된다. 관세청은 3월 27일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차장 등 관세청 인사와 김주영 국회의원, 이종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사화물을 보관 및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로 2014년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 약 6,000평(1만 9,296㎡)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전체 수입 건수 1만 3,866건 중 서울이 1만 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이번 증축에 대해 현재의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의 일 평균 검사 가능한 컨테이너 대수는 6대인 반면, 일 평균 반입 컨테이너 대수가 약 19대에 달해 센터 내 통관 검사장의 처리 한계를 보완하고자 증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8월 준공 예정인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부지 내에 연면적 약 2,000평(5,915㎡)이 증축되고, AI 기반 X-ray 검색기, 화물 자동 이송설비 등 최첨단 스마트 검사장비도 도입될 예정이다.

증축이 완료되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양이 3배 이상 증가해 평균 7일 정도 소요되던 국제이사화물 통관 소요 시간이 약 2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량이 증대되고, AI 기반 X-ray 검색기를 활용한 정밀 검사가 강화돼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 하구현 기자 |

### ●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조감도 ●



출처 : 관세청

## 한·미 FTA 원산지 위반 고위험 수출물품 원산지 점검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우려가 있는 품목군을 대상으로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

3월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큰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 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원상태 우회수출이나 역외산 부품의 단순가공,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등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원산지 검증으로 기업의 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역외산 물품인데도 원산지증명서를 적정하지 않게 발급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수출한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

관세청은 미국·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원산지검증 > 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에 게시하고 향후 기획검증이 완료되면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 연중 수입 최다 4월 화훼류 특별검역 “수입 전 위생 관리부터 신경 써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화훼류가 연중 가장 많이 수입되는 4월 한 달(4월 1~30일)간 화훼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 수입 화훼류 검역 현장에 검역관을 1인 단독에서 2인 1조로 확대 배치하고 실험실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 채취량도 2배로 확대하는 등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강화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의 황선주 사무관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특히 화훼류 검역은 열매나 흙이 부착돼 폐기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열매, 흙이 있는 경우 해당 화훼류를 선별 폐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상대국에서 국내로 수입되기 전부터 위생 관리, 사전 소독, 선별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수입 어린이 제품 KC 미인증, 인증정보 허위로 15만 점 적발

관세청이 학용품,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3월 27일 밝혔다. 작년 비슷한 시점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도 적발된 양은 5만 4,000여 점으로 올해는 작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관세청은 새 학기를 맞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2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다. 완구(11만 8,000점)와 학용품(3만 3,000점)이 주로 적발됐으며, 특히 수입 시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학용품의 경우 적발 제품의 60% 이상이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이었다.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부가가치비율 작성 방법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인도 CEPA
질문	원산지증명서 제10란 '원산지 기준'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작성할 때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기재된 명문 %와 실제 충족한 % 중 어떤 것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역내가치포함비율은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X%'로 기재하면 되지만, 해당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같은 협정 제4.7조에서도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 간에 경미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상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상품이 협정에 따라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 'RVC X%'를 기재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 2. 원산지증명 제도

#### (1) 개요

원산지증명 제도는 크게는 기관발급 그리고 자율발급 2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이고, 두 번째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 세 번째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이 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방식을 합쳐 우리는 자율발급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의 주제가 되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경우 각 당사국이 정하는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기관발급 FTA(CEPA)다.

#### (2)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한·인도 CEPA의 원산지증명서는 대표적인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로, 한·인도 CEPA 부속서 4-나 원산지증명서에 통일서식으로 규정돼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각 경우에 맞게 상품의 수출 전 원산지 검증을 관련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수출 당사국의 정부지정기관(발급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우리나라에서 권한 있는 기관은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말하고, 인도에서 권한 있는 기관이란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 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수산물수출개발원(MPEDA, 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섬유위원회(Textiles Committee)를 말한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국내법령에 따라 작성 및 발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세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cert.korcham.net)에서 발급 가능하다.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사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 유니패스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은 발급 수수료 여부와 별개로 상공회의소의 발급 건이 더 많다.

관세연감(2024)에 따르면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는 2023년 12월 말 기준 52만 9,252건 발급됐으며, 발급 비율은 세관 약 33%, 상공회의소 약 67%였다. 한·인도 CEPA의 경우 총 9만 3,135건의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됐고, 그중 세관은 약 34.6%(3만 2,232건), 상공회의소는 약 65.4%(6만 903건)의 발급 비율을 보였다. 전체 발급 건의 비율과 비교하면 한·인도 CEPA에서 세관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비율이 약간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인도 CEPA 제4장(원산지 절차) 부속서 4-나(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한·인도 CEPA 원산지 증명서는 제1번란[Exporter(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수출자(이름, 주소, 국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부터 제14번란[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제3국 송장(이름, 주소, 국가)]까지 작성된다.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을 위한 지침(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Certificate of Origin)에서는 각 란의 작성 방법이 설명돼 있으며, 해당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뒷면에 복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고 안내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도 이를 반영한 작성 방법이 안내돼 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자, 생산자, 수하인의 정보뿐 아니라 운송 수단 및 경로, 물품명세(품명, 수량, 총중량, 원산지기준, HS Code 등) 등의 정보를 작성하게 된다. 해당 란의 작성은 필수인 것도 있고 선택인 경우도 존재한다.

이번 호 주제인 한·인도 CEPA 제4장 부속서 4-나 원산지증명서의 제10란 원산지 기준(Origin criterion)에는 원산지 판정 대상 상품에 적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 3. 질문 & 답변의 해석

####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질문은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작성할 때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기재된 명문 %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충족한 %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다. 한·인도 CEPA는 원산지 결정기준 특성상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원산지증명서에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어떤 방식으로 부가가치비율이 표기되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 한·인도 CEPA 원산지 판정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상품 요건이라는 것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충족됐는지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품무역에 관한 FTA 목적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협정상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FTA 실무상 원산지 상품 요건에 관한 부분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기준(General Rules)이 존재한다.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 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정해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인도 CEPA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상 부가가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타 협정보다 중요한 편이다. 한·인도 CEPA 제3장(원산지규정) 제3.2조(원산지 상품)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가. 제3.3조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완전생산품)인 경우 또는 나.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였

으나 제3.4조의 요건을 충족한 상품(불완전생산품)”이 있다.

다만,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3.4조(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를 적용해 원산지 판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제3.4조에서는 “최종 제조 공정이 수출 당사국 영역 내에서 수행된다면, 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또는 나. 부속서 3-가호에 규정된 가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1)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35% 이상이고, 2) 상품이 그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분류된 세번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6단위 기준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CTSH and RVC 35%)”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속서 3-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들은 모두 ‘CTSH and RVC 35%’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협정에 비해 부가가치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다른 협정은 각 HS Code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별표’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ASEAN FTA, 한·인도 CEPA처럼 불완전 생산품에 대해 ‘CTH or RVC 40% (한·ASEAN FTA)’, ‘CTSH and RVC 35%(한·인도 CEPA)’와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규정해 놓은 FTA가 있다.

### (3)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은 수출대상 물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를 계산해 그 부가가치의 창출이 각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역내산) 국가로 인정해주는 기준으로 FTA 원산지 판정의 대상이 되는 수출(공급)물품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격을 통해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한다.

부가가치기준은 협정에 따라 다른 산출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역내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규정하는 ‘RVC법(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과 역외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것이 규정되는 ‘MC법(Import Contents Method)’이 있다.

RVC법과 MC법은 결국 계산식이 다른 것인데, 선택할 수는 없고 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RVC법은 집적법(BU, Build Up Method), 공제법(BD, Build Down Method),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로 나뉜다. 계산식상 RVC는 높으면 높을수록 원산지 판정에 유리하고, MC는 낮으면 낮을수록 원산지 판정에 유리하다.

원산지 판정 대상 상품 가격을 산정할 때 RVC에서 사용하는 집적법 또는 공제법을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FOB(본선인도조건) 가격(조정가격 등으로 표현되는 협정도 있다)을 기반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고, MC의 경우 EXW(공장인도조건)을 기반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한다.

다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협정 중 한·UAE CEPA는 부가가치기준인 인정가치포함비율(QVC, Qualifying Value Content)을 적용할 때 공제법을 적용하는데, FOB 가격 또는 EXW 가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EXW 가격이 사용된 QVC 요건은 FOB 가격에 기초해 계산된 QVC 요건보다 5퍼센트포인트 더 낮게 설정하고 있다. 만약 원산지 결정기준이 ‘QVC 40퍼센트 이상일 것(QVC 40%)’이라면 FOB 가격을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는 경우 40%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EXW 가격을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는 경우 35%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때는 FOB, EXW 가격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나, 제3.7조[허용치(최소허용기준을 뜻한다)], 제3.15조(상품의 세트), 제3.16조(영역 원칙)에 대한 가격기준은 공장도가격만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아직 발효되지 않은 협정인 한·GCC FTA의 경우 RVC인 집적법 또는 공제법을 통한 부가가치기준 적용이 가능한데, 원산지 판정 대상인 상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공장도가치(ExWorks Value)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발효되는 협정에서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은 무조건 RVC(QVC)라고 해서 FOB 가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4) 질문 & 답변 사례 검토

질문 & 답변 사례를 검토하려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의 제10란(Origin criterion, 원산지 기준) 작성 방법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제10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다음 표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원산지 기준	제10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인도와의 협정 제3.4조 제1항 나호를 충족하는 물품	CTSH + RVC 35%
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CC, CTH, CTSH
(2)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RVC %
(3)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CC, CTH, CTSH 또는 RVC %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CC, CTH, CTSH + RVC %

원산지 기준	제10란에 기입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SP
(6) 기타	Others
라. 인도와의 협정 제3.14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OP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나. 인도와의 협정 제3.4조 제1항 나호를 충족하는 물품, 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중 (2)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3)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중 원산지 판정을 부가가치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나라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원산지증명서 서식에는 부가가치비율 작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언급돼 있지 않으나, 한·인도 CEPA 부속서 4-나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을 위한 지침에서는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서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을 작성할 때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X%(예 : RVC 35%)’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역내가치포함비율은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X%’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제4.7조에서도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 간에 경미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상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상품이 협정에 따라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 ‘RVC X%’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인정될 것임을 안내하고 있다.

한·인도 CEPA와 같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제도를 택하고 있는 한·ASEAN FTA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나온 바 있다. 관세청은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8란(원산지 기준)에 부가가치기준 기재 시 실제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을 기재해도 되는지 문의에 대해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 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원산지 기준)에는 원산지 기준 충족에 필요한 ‘RVC’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RVC를 기재해도 인정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ASEAN FTA에서는 HS Code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22차 한·ASEAN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AKSTROO, ASEAN-Korea FTA Sub-committee on Tariffs and Rules of Origin)는 각 당사자가 제8란의 원산지 기준에 실제 부가가치기준(실제 부가가치비율)이 작성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at the 22nd Korea-ASEAN AKSTROO, which was held in Seoul, February 2016, the Parties agreed to indicate ‘Origin Criterion’ in the box number 8 and to accept even when there is actual value content).

다만,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원산지 판정(예를 들어 B,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부품 또는 제품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종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55 이하이고 수출 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이뤄진 물품)이 이뤄진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의 B 뒤에는 비원산지 재료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미한 하자과 관련해 한·인도 CEPA 제4.7조(원산지증명서의 불일치)에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상품의 수입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 간에 경미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상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미한 차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한·인도 CEPA에 대한 관세청의 집행지침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ASEAN FTA에도 한·인도 CEPA와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관한 한·ASEAN FTA 집행지침을 보면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경미한 하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으며, 경미한 하자는 오타(typo)가 대표적이고, 원산지와 관계없는 형식적인 사항으로 송품장(invoice) 등에 의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다음의 원산지증명서 인정 요령을 제외하고는 원산지와 관계없는 항목은 경미한 하자과 봐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집행지침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미기재 또는 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은 원산지증명서의 핵심 사항으로 통관 단계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보완 요구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반려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한·ASEAN FTA 또한 제22차 한·ASEAN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 실제 부가가치비율이 작성된 것은 하자과 보지 않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은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비율을 ‘보다 더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과 보지 않고 실제 부가가치비율이 작성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인도 CEPA 부속서 4-나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을 위한 지침’에서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서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을 작성할 때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X%(예 : RVC 35%)’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 답변한 대로 해당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수입관세당국의 추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질문 & 답변 사례를 검토해보면 관세청에서는 경미한 하자과 관련해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에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서류의 효력 전체가 부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주소·품명 등의 단순한 오·탈자와 같은 경우 경미한 하자로 볼 수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하자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려우며 사안별 구체적 서류를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례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에 실제 부가가치비율이 작성돼도 특혜관세 적용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작성은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작성돼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을 잘 참고해 발급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특수통관 / 수출입물품 검사로 인한 물품 손실**

**통관 물품 중 검사를 위해 내부를 열어본 상품만 외부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통관 중 물품 손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 직구한 특송물품 통관 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물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손실된 수출입물품의 수입자(화주)가 검사세관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검사세관에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1. 물품사진 등 물품 손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구매영수증, 수리비 내역 등 물품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 사본

**환급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환급대상 수출물품의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세청장은 공급업체가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즉시 반입장소 관할지세관

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 ■ 「수출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 제3호 및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 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 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세관장이 법 제4조 제3호 및 규칙 제2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 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품목분류 / 설탕의 HS Code

### 브라질산 양봉사료용 설탕의 품목분류가 궁금합니다.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701.1호에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됩니다. 소호 제1701.1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1701.9호 '기타'에 분류될 수 있으며, 세분류로 '기타'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1701.99-0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 따라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인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당'에서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물품으로 사탕수수당은 제1701.14호에

분류되고, 그 중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은 제1701.14-1000호,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은 제1701.14-2000호에 각각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701.13-0000호에는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을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2호에 "소호 제1701.13호는 원심분리법을 거치지 않고 얻어진 사탕수수당 중에서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인 것만을 포함한다. 이 물품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비정형인 천연 타형(他形) 미세결정만을 함유하는데, 이러한 미세결정들은 당밀(糖蜜)과 그 밖의 사탕수수의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품목분류는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내 품목분류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16
결정 세번	제1701.99-0000호
품명	Other sugar; BEET SUGAR; POLAND
물품 설명	백색 결정상의 설탕(편광도수 :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 99.98°Z) - 편광도수는 'ICUMSA Methode GS1/2/3/9-1'에 의거 시험한 결과임 - 용도 : 벌 먹이용(양봉기초사료)

#### FTA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고 있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서류 중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 제출해도 될까요?**

원산지인증수출자인 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증 대상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 제출 없이 제조업체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 및 해당 업체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과 관련된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출자와 관련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증 등은 수출자가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전담자 지정 및 운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부 원산지전담자 지정을 위한 교육점수(품목별 : 10점 이상, 업체별 : 20점 이상)를 취득한 후 세관에 인증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진공펌프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김희정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 I. 들어가며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하는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관세율표상 ‘~용(for)’으로 규정돼 있는 품목번호와 관련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객관적 요소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5. 10. 19.부터 2018. 12. 31.까지 진공펌프를 수입신고하면서 기획재정부고시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표의 품목번호 앞 6자리는 위 협약에 의해 공통적으로 정해지고, 뒤 4자리를 우리나라에서 정한다. 이하 ‘HSK’라 한다)상의 품목번호를 진공펌프 중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에 해당하는 제8414.10-9010호로 신고했다.

2. 원고가 수입, 판매하는 진공펌프는 반도체 제조공정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설치돼 공정상 요구되는 진공도를 형성하는 제품인데, 이 사건 펌프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조·공급됐다.

3. 피고는 2020. 6. 4.경부터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펌프의 품목분류에 있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등으로 수입했음에도 세율이 낮은 반도체 제조용으로 신고했다(2017년 이전에 수입한 이 사건 펌프는 진공펌프 중 기타의 것에 해당하고, 2017년 이후에 수입한 이 사건 펌프는 진공펌프 중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펌프를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신고했음)는 이유로 원고에게 관세 등을 세액경정·고지했다.

### Ⅲ.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2017. 1. 1. 전에 수입된 이 사건 펌프는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 가능한 기기인 동시에 진공도 기준도 충족했으며, 평판디스플레이 공정 중 반도체에 해당하는 박막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의 제조공정에만 사용됐다. 따라서 이 사건 펌프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에 해당해 관세율표상 제8414.10-9010호로 분류되고 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됨이 상당하다.

나. 2017. 1. 1. 이후에 수입된 이 사건 펌프 역시 박막트랜지스터 제조공정에 사용됐으므로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해당해 제8414.10-9010호로 분류돼야 한다. 또한 진공도 규격 요건을 삭제한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협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양자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율표상 제8414.10-9010호(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에 분류해 제8414.10-9020호(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사건 펌프는 반도체 제조공정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제8414.10-9010호로 분류되고 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됨이 상당하다.

#### 2. 관계 법령의 개정 경위

가. 이 사건 펌프가 포함되는 진공펌프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관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1) 1999년 말까지 시행된 舊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돼 200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관세율표는 품목번호 제8414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번호	품명	세율(%)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 (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진공펌프	8

2) ㉔ 舊 「관세법」은 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돼 2000. 1. 1. 시행되면서 품목번호 제8414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9 \times 10^{-3}$ 토르(Torr)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의 세율을 3%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후 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돼 2007. 4. 1. 시행되면서 ‘1. 진공펌프’ 왼쪽에 ‘10’의 소호가 추가됐고,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항목 번호, 문구 등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다음 4)항과 같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 내용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됐으며 세율 역시 유지됐다.

번호	품명	세율(%)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 (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414	1. 진공펌프	
	가. 항공기의 것	8
	나. 기타	
	(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9 \times 10^{-3}$ 토르(Torr)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3
	(2) 기타	8

㉔ 위와 같은 舊 「관세법」의 분류에 따라, 舊 HSK(2014. 11. 14.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3호로 개정돼 2015. 1. 1. 시행된 것으로서 2016. 11. 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돼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는 품목번호 제8414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소 번호를 정했다.

품목번호	품명	Description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 (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Air or vacuum pumps, air or other gas compressors and fans; ventilating or recycling hoods incorporating a fan, whether or not fitted with filters.
8414 10	진공펌프	Vacuum pumps
8414 10 1000	항공기용	For aircraft
8414 10 90	기타	Other
8414 10 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9 \times 10^{-3}$ 토르(Torr)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Fo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other than those of an ultimate vacuum less than $9 \times 10^{-3}$ Torr)
8414 10 9090	기타	Other

3) 한편, 舊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6. 12. 1. 대통령령 제27651호로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것으로서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60호로 개정돼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대해 적용할 일반양허관세에 관해 ITA 확대협정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별표 1의 다’를 신설했다.

[별표 1의 다] (2016. 12. 1. 대통령령 제2765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품목번호	품명	세율(%)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414 10	진공펌프	
8414 10 90	기타	
8414 10 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9 \times 10^{-3}$ 토르(Torr)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2.3
8414 10 9090	기타	
	-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6.0

4) ㉔ 舊 「관세법」은 2016. 12. 20. 법률 제14379호로 개정돼 2017. 1. 1. 시행되면서 품목번호 제8414호의 진공펌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에서 도달진공도 요건을 삭제했고,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을 추가했다. 이후 2018. 12. 31.까지 관세율 표는 개정되지 않았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	10	진공펌프	
		1. 항공기용	8
		2. 기타	
		가.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8
		다. 기타	8

㉕ 위와 같은 舊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舊 HSK(2016. 11. 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돼 2017. 1. 1. 시행된 것으로서 2019. 9. 1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7호로 개정돼 2019. 10. 1. 시행되기 전의 것)는 다음과 같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에 ‘제9020호’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품목번호	품명	Description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 없다)	Air or vacuum pumps, air or other gas compressors and fans; ventilating or recycling hoods incorporating a fan, whether or not fitted with filters.
8414 10	진공펌프	Vacuum pumps
8414 10 1000	항공기용	For aircrafts
8414 10 90	기타	Other
8414 10 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Fo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8414 10 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Fo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flat panel displays
8414 10 9090	기타	Other

㊤ 舊 양허관세규정(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60호로 개정돼 2017. 1. 1. 시행된 것) 별표 1의 다는 이와 같은 품목번호의 변경과 단계적 세율 인하, 관세 철폐 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 [별표 1의 다] 정보기술협정 확대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

품목번호	품명	세율(%)		
		2017년	2018년	2019년 ~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 10	진공펌프			
8414 10 90	기타			
8414 10 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1.5	0.8	0.0
8414 10 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4.0	2.0	0.0

5) 이상과 같은 관세율표와 HSK, 「양허관세규정」의 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단위 : %).

기간	~ 2016. 11. 30.		2016. 12. 1. ~ 2016. 12. 31.		2017. 1. 1. ~ 2017. 12. 31.		2018년	2019년
	관세율표, HSK	서울	양허관세규정	서울	양허관세규정	서울	서울	서울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 추었는지에 상관없다)							
10	진공펌프							
90	기타							
9010	반도체 제조용기 기의 것(도달진 공도가 $9 \times 10^{-3}$ 토르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	3	좌동	2.3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1.5	0.8	0
9020	-	-	-	-	평판디스플레이 이 제조용 기기 의 것	4.0	2.0	0
9090	기타	8	기타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이 제조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 의 것(신설)	6	삭제			

### 3. 판단

#### 가. 인정사실

1) 반도체(semiconductor)란 전기전도도에 따른 물질의 분류 가운데 하나로 상온에서 전기전도율이 도체와 부도체(절연체)의 중간 정도인 물질(게르마늄, 실리콘 등)을 말한다.<sup>1)</sup> 반도체소자(semiconductor device)는 반도체를 소재로 만든 회로소자<sup>2)</sup>인데, 이는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콘덴서 등 제품 내에서 단일한 기능을 하는 소형 전자 반도체 부품인 개별 반도체(discrete)와 시스템반도체, 메모리반도체 등 개별 반도체를 하나의 기판에 집약시켜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구현한 집적회로(IC)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트랜지스터는 전류나 전압 흐름을 조절해 증폭하거나 스위치 역할을 하는 반도체소자다.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은 전반부의 박막트랜지스터 제조공정과 후반부의 유기물 증착

1)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출처 : 두산백과, 소자 : 물리 장치, 전자회로 따위의 구성 요소가 되는 낱말의 부품으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발광부) 제조공정으로 구분된다.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조공정은 부도체인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 물질을 증착하고, 그 위에 감광액(Photo Resistor)을 도포하며, 원하는 패턴이 그려진 마스크(Mask)를 대고 빛을 쏘아 빛을 받은 부위의 감광액을 단단하게 만든 후, 빛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감광액을 제거하고(현상), 그 부분의 반도체 물질까지 제거하며(식각), 단단해진 감광액 부분까지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 사건 펌프는 증착 공정 중 한 종류인 물리적 기상 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에 쓰이는 증착기(Sputter)에 사용되고, 식각 공정에 쓰이는 식각기(Dry Etcher) 이후 이온 도핑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온 주입기(Ion implanter)에 사용되는 등 유기물 증착 제조공정에는 사용되지 않고, 오직 박막트랜지스터 제조공정에만 사용된다.

3) 원고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수입하는 진공펌프는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제조장비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고, 타업체에서 사용하는 장비와는 호환성이 없으며, 고객과의 비밀유지계약 등에 따라 해당 고객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된다. 또한 원고는 진공펌프의 종류를 총 12종의 반도체 전용 모델, 총 14종의 디스플레이 전용 모델로 나눠 각 모델명을 달리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 이 12종의 반도체 전용 모델은 반도체 제조장비사 및 반도체 제조사별로 필요한 특수사항에 따라 나뉘고, 이 14종의 디스플레이 전용 모델 역시 디스플레이 제조사별로 필요한 특수사항을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 피고는 디스플레이 전용 모델로 제작된 이 사건 펌프에 대해서 관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을 했고, 반도체 전용 모델로 제작된 진공펌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4) 원고가 작성한 ‘각 산업군별 해당 업체에 따른 분류표’에 의하면, 이 사건 펌프 중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 사이에 호환되는 모델은 없으며, 동일 산업에서도 장비제조업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호환되는 모델은 없다.

5) F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펌프의 거래방법 및 설치방법에 관해 이 사건 펌프가 이용될 공정과 이 사건 펌프를 장착할 설비를 정한 후 설비의 사양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펌프의 제작을 주문하고, 납품받은 이 사건 펌프는 공급자가 직접 설비에 장착해 준다고 진술했으며, 2015. 10. 1.부터 2020. 6. 30.까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펌프의 용도는 전부 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특수제작 주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 나. 판단

이 사건 펌프가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인지, ‘기타(2017년 이전 수입물품)’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인지(2017년 이후 수입물품)에 관해 살펴본다.

이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일부인 박막트랜지스터 기판의 제조를 위한 이 사건 펌프는 ‘평판디스플레이

이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이고, 제8414.10-9010호의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원고가 수입하는 진공펌프는 최초 주문 시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될 것인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될 것인지 정해져 그 용도 등을 기준으로 고유한 모델명으로 관리, 제작 및 수입된 후 각 고객사에 공급된다. 이 사건 펌프는 수입신고 당시의 객관적인 용도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제작(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제조장비에 전용되도록 설계됐음)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사에 공급될 것으로 확정돼 있었고, 해당 제조사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특수제작됐다.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과정에서 이 사건 펌프가 사용되는 박막트랜지스터 기판 제조공정은 자체 완결적인 공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일부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한 공정이 이뤄지는 것에 불과하다. 박막트랜지스터 기판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지는 박막트랜지스터는 그 자체로서 완성품이거나 독립적인 상품이 아니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과정에서 부도체인 유리기판 위에 화소의 전극 스위치 역할을 하는 박막 형태의 트랜지스터 층을 만든 미완성품에 불과하다. 따라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박막트랜지스터 제조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 방법으로 진행되고, 이 사건 펌프가 박막트랜지스터 제조공정에만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반도체 제조공정이거나 이 사건 펌프를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후반부의 유기물 증착 제조공정만 따로 떼어 이 부분의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품목만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3) 원고는 관세율표에서 '~용(for)', '주로 사용(principally for)', '전용(solely for)'된다는 표현을 엄격하게 구별해 사용하고 있고, '~용(for)'은 '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이라 함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 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바, 이 사건 펌프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용도로 제작돼 수입된 이상 설령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 가능하더라도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다. 결론

이 사건 펌프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이 아닌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분류돼야 하므로, 2016. 12. 31.까지 수입된 이 사건 펌프는 HSK 제8414.10-9090호의 '기타'로 분류돼야 하고, 2017. 1. 1. 이후 수입된 이 사건 펌프는 HSK 제8414.10-9020호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분류돼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IV. 결어

관세율표상 동일한 품명의 수입물품이 용도에 따라 품목번호 및 세율이 다르게 규정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저세율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로 결정받고자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과 품목분류에 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진공펌프 품목분류와 관련해 해당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가공정도 등 객관적인 요소들에 따르면 이 사건 펌프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용도로 제작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공급됐으므로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고,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만을 떼어 이를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봐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품목분류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상 판결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하는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볶은 커피 대용물의 품목분류

이 희 영 |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피곤한 몸과 마음을 깨우기 위한 진한 풍미의 모닝커피 한잔, 식후 마시는 달달한 믹스커피, 야근의 든든한 지원군 블랙커피는 현대인들의 삶에 없어서 안 될 필수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커피를 볶아 마시기 시작한 것은 13세기부터다. 이전까지는 말린 커피 열매를 으깨서 지방과 혼합해 먹거나 생콩과 말린 껍질로 와인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커피의 대표적인 품종으로 아라비카(*Coffea arabica* L.)와 로부스타(*Coffea robusta* L.)가 있다. 고산지대에 적은 강수량으로도 생육이 가능하며, 열매는 짙은 붉은 색으로 안에는 녹색의 씨 2개가 존재한다. 커피의 생육환경을 보더라도 아프리카의 가장 큰 고원인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임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출처 : RhoadsRoast Coffees & Importers

커피나무의 녹색 씨는 맛과 향이 없다. 볶는(roasting) 공정으로 생두는 녹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고 팽창되며,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 커피의 풍미를 담당하는 휘발성 물질이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200℃ 이상, 10 ~ 15분 정도면 볶는 공정이 완료되며, 가열 속도나 최종 온도에 따라 커피의 풍미를 제어할 수 있다.

커피의 볶는 공정 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 당의 캐러멜화(caramelization), 클로로겐산·단백질·다당류의 분해, 당·아미노산 반응인 마이야르 반응(Maillard reaction) 등이 있다. 이 중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커피 본연의 색을 부여하는 갈색 색소 멜라노이드(melanoidine)이 형성된다.



볶는(roasting) 온도 및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관세율표상 ‘볶은 커피 대용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제11류 주 제1호 가목에 ‘볶은 맥아로서 커피 대용물로 조제한 것’을 제0901호나 제21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식물의 부분, 과실, 곡물, 두류 등을 원료로 해 커피 대용물을 제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볶은 커피 대용물 관련 규정 ●

<p>■ 제11류 주 제1호(제외규정)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 대용물로 조제한 것(제0901호·제2101호)</p> <p>■ 제8류 총설(이 류에서 제외) (iii) 볶은 과실과 견과류(예 : 밤·아몬드와 무화과)(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일반적으로 커피 대용물로 쓰이는 것)(제2101호)</p> <p>■ 제1003호(이 호에서 제외) (b) 볶은 보리(커피 대용물)(제2101호)</p> <p>■ 제1201호 이 호에서는 커피 대용물로 쓰이는 볶은 대두는 제외한다(제2101호).</p> <p>■ 제1703호 당밀은 알코올과 알코올성 음료의 증류 원료와 가축용 사료와 커피 대용물로 사용하며, 때로는 당을 추출하는 데도 사용한다.</p> <p>■ 제2101호(이 호에 분류) (5) 볶은 치커리(roasted chicory)·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나 커피에 첨가하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본 재료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coffee)’로 칭한다(예 : 보리 ‘커피’·맥아‘커피’나 도토리‘커피’). 볶은 치커리는 제1212호의 치커리 뿌리[치코리움 인티부스 변종 사티붐(Cichorium intybus var. sativum)]를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무화과·곡류[특히 보리·밀·호밀]·쫄면 완두콩·루핀의 씨(lupine seed)·식용 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 뿌리와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roasted malt)도 이 호에 포함한다.</p>
---

다음은 제2101.30호 ‘볶은 커피 대용물’로 분류된 국내외 사례다. 최근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입자상의 볶은 돼지감자를 침출차 용도로 티백 포장한 것이 제2101.30호로 결정됐다. 또한 일본의 분류 사례에는 볶은 공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온도와 시간이 명시돼 있는데, 원재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당의 마이야르 반응 및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 160℃, 20분 이상의 열처리 조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no.	물품 설명	참조번호
1	<p>품명 : JERUSALEM ARTICHOKE TEA  - 불규칙하게 파쇄한 볶은(160℃, 50분) 돼지감자의 거친 입자상을 티백포장(침출차)  ※ 고소한 맛과 향·열처리에 의한 갈변 확인, 전분 입자 파괴 및 비결정질 확인</p>	 <p>품목분류2과-1199 (2025. 2. 28.) 위원회 결정</p>
2	우영을 파쇄하고 볶은(160℃, 30분) 것으로 티백에 포장	111001083 (2011. 3. 23.) 일본
3	옥수수(Zea mays)를 볶아서(250℃, 40분) 파쇄한 후 티백에 포장	110003610 (2010. 8. 5.) 일본
4	작두콩을 볶아서(1차 : 180℃, 6분, 2차 : 120℃, 15분) 파쇄한 것을 티백에 포장	110005221 (2010. 11. 15.) 일본
5	민들레 뿌리를 건조한 후 파쇄 후 볶은 것(1차 : 150 ~ 160℃, 30분, 2차 : 180 ~ 200℃, 15분)	112004844 (2012. 9. 4.) 일본
6	우영을 자르고 열풍건조(70℃, 2 ~ 3시간)해 볶은 것(200℃, 20 ~ 30분)	111001164 (2011. 3. 23.) 일본
7	결명자를 건조해 볶은(250℃, 40분) 후 파쇄해 티백에 포장	110003681 (2010. 8. 12.) 일본
8	메밀 껍질을 제거하고 건조(120℃, 30분)한 후 볶아서(180℃, 30분) 티백 포장	116000217 (2016. 1. 28.) 일본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index.do](http://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다음은 시중에 판매되는 볶은 커피 대용물 제품이다. 제품명이나 현품 표시사항을 통해 커피 대용물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커피와 유사한 색상을 나타내며, 커피의 향과 쓴맛을 표현한 디카페인 음료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품 사진	제시 성분
	볶은 보리, 호밀, 치커리, 맥아
	볶은 민들레 뿌리, 치커리 뿌리
	볶은 치커리 뿌리
	볶은 돼지감자

출처 : 제조사 홈페이지 및 구글 이미지 등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의 22 볶은 곡물의 분류기준에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 등으로 침출차로 사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21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

22	볶은 곡물 (관세율표의 곡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 등 침출차로 사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2101호에 분류한다.
----	-----------------------------	--

따라서 관세율표 제2101호의 볶은 커피 대용물로 분류함에 있어 어떤 원료가 사용됐는지, 열분해를 통한 풍미를 발현하기에 충분한 온도와 시간으로 제조된 것인지, 커피와 유사한 색상이나 풍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다. 추가로 제시된 물품의 성상을 비롯해 소매포장된 제품일 경우 현품 표시사항 등을 고려한다면 물품이 적절히 분류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참고 문헌

1. Gary Reineccius. 1998. Source Book of Flavors. 2nd Edition
2. Pinheiro *et al.* 2020., Chemical Constituents of Coffee. Quality Determinants In Coffee Production(pp.209-254)

## 대두레시틴 분류 사례 - 2022년도 6월 품목분류 사전심사 -

김 흥 관 | 부산세관 분석실

### 1. 물품 소개



※ 해당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최근 뇌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다. 특히 기억력 감퇴와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주목할 만한 성분이 있다. 바로 ‘레시틴’이다.

레시틴은 천연 인지질로, 동물성 원료인 달걀노른자와 식물성 원료인 대두, 해바라기씨 등에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이 성분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뇌 건강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레시틴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1) 레시틴의 주요 효능

레시틴은 주로 포스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이노시톨 등으로 이뤄져 있다.

모두 인지질로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며, 세포 간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레시틴 구조는 지방산, 글리세롤, 인산으로 구성됐으며, 신경 세포 기능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뇌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

**뇌 건강 증진 :** 레시틴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포스파티딜콜린은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로 작용한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레시틴을 섭취하면 뇌 기능을 증진하고 인지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노인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혈관 건강 :**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해 혈중 LDL(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간 기능 개선 :** 레시틴은 간에서 지방 대사를 돕고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방지한다. 지방간 예방과 간 기능 개선에 기여하며, 알코올성 간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소화기능 개선 :** 레시틴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해 소화기능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장 건강을 지원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피부 건강 :** 레시틴은 보습 기능이 뛰어나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항염 효과가 있어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 2) 레시틴 섭취 방법

레시틴은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다. 레시틴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달걀, 대두, 해바라기씨, 땅콩버터 등이 있다. 레시틴 보충제는 파우더, 캡슐, 액상 형태로 판매되며, 하루 1,200 ~ 3,000mg의 섭취가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시틴은 대두나 달걀에서 추출하는 만큼 해당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과도한 섭취는 복통이나 설사 등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권장량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시틴은 항응고제나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레시틴은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의약품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식품 산업에서는 유화제 및 안정제로 사용되며, 초콜릿, 마가린, 아이스크림 등에 포함돼 있다.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쥐 피부 보습제나 세럼에도 포함된다.

레시틴은 뇌 건강 증진, 심혈관 건강 개선, 간 기능 유지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성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대두레시틴의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한다.

## 2. 분류 사례

### ○ 개요

- 레시틴(55% 이상)에 대두유가 혼합된 황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 사료 원료용

### ○ 결정 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 세번 : 제2923.20-1000호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2923.20-1000호에는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중 ‘레시틴’을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2) 레시틴(lecithin)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phosphoaminolipid)\* : 이들은 글리세린인산이 올레산·팔미트산과 그 밖의 지방산과의 복합물과 콜린과 같은 유기질 소염기로부터 얻어진 에스테르(ester)(인지질 : phosphatide)이다. 일반적으로 황갈색 왁스질의 괴상으로서 에탄올에 가용성이다. 레시틴(lecithin)은 알의 노른자위(오보레시틴)와 동물과 식물 조직에 함유되어 있다. 또한 이 호에 포함되는 상거래 관습상의 레시틴(lecithin)은 대두 레시틴이 많으며 이는 아세톤에 녹지 않는 인지질(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60%에서 70%까지)·대두유·지방산과 탄소화물의 혼합 구성물이다. 상거래 관습상의 대두 레시틴은 밝은 갈색이며 다소간 점성질이고, 만약 대두유를 아세톤으로 추출하면 황색의 알갱이 모양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총설에서 “(C)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하는 물품 - 제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정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예외가

있다. 이들 예외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 <중략> ... 제2923호 - 레시틴 (lecithins)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phosphoaminolipid)”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제2309호 해설서 제외규정 (f)에서 ‘제29류의 물품’을 제2309호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대두유가 혼합된 대두레시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3.20-1000호에 분류했다.

### 3. 품목분류 적용 길라잡이

부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류	(제29류) 유기화학품
호	(제2923호)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HSK	(제2923.20호)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제2923.20-1000호) 레시틴

### 4.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2923.20-1000호
품명	Lecithins
물품 설명	- 레시틴(55% 이상)에 대두유가 혼합된 황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 사료 원료용

관련  
이미지



## 장갑 부분품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장갑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삶과 함께해 왔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장갑은 이집트 제18왕조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이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장갑은 단순한 방한용품을 넘어 권력과 존엄을 상징하는 동시에 계급을 나타내는 도구가 됐다. 왕족과 귀족, 그리고 주교만 손가락이 분리된 장갑을 착용할 수 있었으며, 신분이 낮은 계층은 병어리장갑만 착용해야 했다.

장갑은 오랫동안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16세기 중엽, 프랑스 앙리 2세의 왕비 카트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가 장갑을 즐겨 착용하면서 여성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2,000켈레 이상의 장갑을 소장하며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했다고 전해진다. 남성들은 17세기를 정점으로 사냥할 때를 제외하고는 장갑에 관한 관심이 줄어든 반면,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액세서리로 자리 잡았다. 이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834년 장갑을 짜는 기계가 발명되면서 장갑은 본격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흑색 고무 양면에 편물이 적층돼 있는 스트립상으로 '장갑류'에 해당하는 제6116.99-0000호로 신고했다.

물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로 18cm × 세로 5cm × 두께 2cm의 스트립상이며, 양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된 것으로 용도는 장갑 제조용(손목 부분에 그대로 덧대어 사용)인 물품이다.



먼저 해당 물품이 고무의 양면에 편물이 적층돼 있어 제40류에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제40류 총설에 '고무와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이 설명돼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총설

고무와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한 분류는 본래 제11부의 주 제1호 자목, 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중략> ... 다음의 물품은 이 류에 분류한다.  
... <중략> ...

(c)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로서 1,500g/m<sup>2</sup>을 초과하고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의 것 ;

이와 같은 내용을 참조해 해당 물품의 1제곱미터당 중량을 확인한 결과 약 700g/m<sup>2</sup>로 제40류의 ‘고무와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 물품이 제5906호의 ‘고무 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제5906호 해설서에서는 “(A) 고무를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직물류[침지(浸漬)한 직물류를 포함하며 제5902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중량에 해당하는 것

(1)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m<sup>2</sup> 이하인 것

(2) 중량이 1,500g/m<sup>2</sup>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직용 섬유가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호의 제외규정으로 “(h) 제11부 총설(II)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고무 가공된 직물(일반적으로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을 예시로 들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이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관해 알아보면, 제11부의 주 제7호와 총설에서는 ‘제품으로 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II) 제56류에서 제63류

... <중략> ...

이 부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제품으로 된 것(made up)’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한다.

(1)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모양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 예를 들면,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드레스패턴(dress pattern), 직물의 변을 물결무늬 모양으로 절단된 것[예 : 특정의 더스터(duster)]도 제품으로 된 것으로 취급한다.

... <중략> ...

(7) 특정 모양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분리된 부분이나 특정 길이의 여러 모양으로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본 물품은 편물을 고무시트 양면에 적층시켜 스트립상으로 재단한 후 한쪽 면의 양 모서리를 라운드 가공처리한 것으로, 단순 절단한 것은 아니지만 형태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제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고무 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 직물류'에 해당하지 않고 '제품으로 된 고무 가공된 직물'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제6117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7.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품으로 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전체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제6212호 제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제61류 총설에 "이 류에서는 이 류에 열거된 종류의 미완성이나 불완전 물품(article)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성형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들이 관련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을 분류하는 호와 같은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의 부분품이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의 것을 제외한다)은 제6117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장갑의 손목 부분에 덧대 사용하는 것으로 장갑의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분품인 제611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장갑의 부분품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7.90-0000호로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GLOVE WRIST FOR GLOVES	6116.99-0000 (FCN1 0%)	Glove parts	6117.90-0000 (FCN1 0%)

## 전자 혈압계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최초의 혈압계는 1905년 러시아 군의관인 코로트코프가 발명했다. 그는 청진기와 수은주를 이용해 혈압을 재는 방식을 시도했다. 팔 윗부분을 감아 동맥을 압박해서 일시적으로 혈액의 흐름을 막았다가 압박을 풀면 혈액이 혈관으로 소용돌이치며 쏟아져 흐르게 되고 이때 혈액이 혈관 벽에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는 식이었다.

그는 이 소리를 청진기로 들으며 혈압을 측정했고, 소리가 들린 시점을 수축기 혈압(최고혈압)으로 삼아 수은 압력계 기둥의 높이를 읽고, 소리가 멈춘 시점을 이완기 혈압(최저혈압)으로 읽었다.

지금도 혈압의 단위로 쓰이는 mmHg(수은주밀리미터)는 바로 이 수은(Hg)에서 유래한 단위다. 그런데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혈압 측정에 이용돼 온 수은 혈압계는 위기를 맞게 된다. 혈압계에 쓰이는 수은의 독성 때문이었다.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수은 중독으로 장애 환자와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국제적으로 수은 사용을 우려하게 된 것이다. 당시 미나마타시에서 메탈수은이 포함된 조개 및 어류를 먹은 주민들에게 수은 중독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13년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에서는 2020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제품들의 제조와 수출,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을 채택했다. 협약은 수은화합물 노출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은화합물 사용 금지 및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114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

오늘날 의학계에서는 수은을 사용하지 않고 혈압을 측정하는 기기와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돼 활용되고 있다. 전자식 혈압계가 그 한 예다. 물론 전자식 혈압계는 정확도가 종전의 수은 혈압계보다 떨어지고, 가격이 고가란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 근래에 손목에 차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혈압을 측정 및 관리하기도 한다.

관세율표에서 혈압계는 측정 방식과 관계 없이 제9018호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에 분류된다(손목용의 시계용 스마트기기 제외). 제9018호 (B) 특수 진단용 기기 (3)에서 혈압계가 예시되고 있다.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24호\_2025.3.31.

# 최신개정법령

## 대통령령

- 「관세법 제기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고시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입법예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계획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계획

본 내용은 [www.custra.com](http://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405호, 2025.3.28.)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실카스테일 등 3개 물품에 대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코코아 버터 등 3개 물품에 대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로 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1]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일·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20	파인애플		15	7,000톤
2008	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	97	혼합물			
		1. 과일 카테일			
		가.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000톤
		나. 기타		15	
		2. 기타		15	
2009		과일·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	8	그 밖에 한 가지 과일·견과류·채소 주스		
2009	8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 <i>Vaccinium macrocarpon</i> )·바치니움 옥시코코스( <i>Vaccinium oxycoccos</i> )] 주스,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 <i>Vaccinium vitis-idaea</i> )] 주스	20	6,000톤
2009	89	기타  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 <i>Vaccinium macrocarpon</i> )·바치니움 옥시코코스( <i>Vaccinium oxycoccos</i> )]와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 <i>Vaccinium vitis-idaea</i> )] 이외의 과일·견과류 주스	20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와 기타 견과류 주스는 제외한다.		

[별표 12]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00톤
1803	1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0	
1804	00	코코아 버터(지방이나 기름)		0	
1805	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	

## 고시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15호, 2025. 3. 2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호, 2025.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25-15호(2025.3.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605	2025-06호('25.1.20.)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	
606	2025-15호('25.3.24.)	Cobalt acetylacetonate	
607	2025-15호('25.3.24.)	대두 유박	
608	2025-15호('25.3.24.)	돼지감자 차 티백 등 3건	
609	2025-15호('25.3.24.)	블랙매스(black mass)	
610	2025-15호('25.3.24.)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용 백(bag)	
611	2025-15호('25.3.24.)	의료용 살균한 봉합사	
612	2025-15호('25.3.24.)	블라인드 엔드캡 등 4건	
613	2025-15호('25.3.24.)	알까닭 등 완구 5건	
614	2025-15호('25.3.24.)	엘리베이터용 벨트	
615	2025-15호('25.3.24.)	CALCIUM SILICON CORED WIRE 등	
616	2025-15호('25.3.24.)	참깨 바	
617	2025-15호('25.3.24.)	캐러멜 팝콘 등 2건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618	2025-15호('25.3.24.)	냉동한 미성숙 대두	
619	2025-15호('25.3.24.)	Women's jacket	
620	2025-15호('25.3.24.)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	

## 605.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6호 (2025.1.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Other protein substance	품목분류2과-7330 (13.09.27.)
2	Other protein substance; Protastar	품목분류2과-435 (21.01.15.)

### ○ 물품설명

-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504.00-209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6.10-9020호

※ 단순 오류로 HSK 수정(제2106.90-1020호 → 제2106.10-9020호)

### ○ 변경사유

- 건조기준으로 단백질 함량이 90%미만인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이므로 제2106.10-9020호에 분류(2024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606. Cobalt acetylacetona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 (2025.3.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Cobalt acetylacetonate ; COREBOND CA-20	품목분류2과-5186 (‘14.07.31.)

○ 물품설명

- 미홍색 분말상의 Cobalt acetylacetonat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942.00-909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914.19-0000호

○ 변경사유

- 비환식케톤 구조의 배위화합물이므로 제2914.19-0000호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607. 대주 유박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 (2025.3.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Low fat, low soy grits	품목분류과-101014 (‘04.07.26)

## ○ 물품설명

- 압착법에 의해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대두박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201.00-9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4.00-0000호

## ○ 변경사유

-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고체형태의 유박이므로 제2304.00-0000호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608. 돼지감자 차 티백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 (2025.3.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erusalem artichoke preparation; ROAST CANADA POTATO TEA; R.KOREA(돼지감자)	품목2과-1827 (*16.2.24.)
2	Ginger, roasted; GINGER TEA(연고농장 볶은 생강차)	품목2과-6072 (*20.7.20.)
3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otherwise prepared; balloon flower tea; R.KOREA(도라지)	품목2과-5761 (*20.7.9.)

### ○ 물품설명

- 티백에 담긴 소매 포장된 침출차
-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8.99-9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1.30-9000호

### ○ 변경사유

- 커피대용물에 해당하므로 제2101.30-9000호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609. 블랙메스(black mas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 (2025.3.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Mixed Metal Oxide	품목분류2과-18527 (‘22.07.22.)

## ○ 물품설명

- 폐배터리를 분해하고 선별하여 건조한 흑색계 분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620.99-0000호

## ○ 변경사유

- 금속 추출용의 잔재물이므로 제2620.99-0000호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610.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용 백(ba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 (2025.3.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tarpaulin laundry hamper	품목분류2과-2641 (14.04.15)
2	tarpaulin a recycling bin	품목분류2과-2645 (14.04.15)
3	tarpauli STORAGE	품목분류2과-9151 (12.12.04)
4	부직포 분리수거함	품목분류2과-9262 (12.12.10)

### ○ 물품설명

-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백 등
-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202.92-1090호(①~③), 제4202.92-2000호(④)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4.90-9000호(①~③), 제6307.90-9000호(④)

### ○ 변경사유

-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위한 것이므로 재질에 따라 제3924.90-9000호(①~③), 제 6307.90-9000호(④)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611. 의료용 살균한 봉합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 (2025.3.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tarpaulin laundry hamper	품목분류2과-2641 (*14.04.15)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사출물, needle, thread로 구성된 물품(피부 리프팅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32-9000호

##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006.10-1020호

## ○ 변경사유

- 봉합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제3006.10-1020호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612. 블라인드 엔트캡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 (2025.3.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BOTTOM BAR END CAP ; 방패TYPE	품목분류1과-528 (*16.3.23)
2	HEAD RAIL END CAP	품목분류1과-537 (*16.3.24)
3	BOTTOM RAIL END CAP	품목분류1과-538 (*16.3.24)
4	BOTTOM WEIGHT CLIP	품목분류1과-535 (*16.3.24)

### ○ 물품설명

- 블라인드 고정을 위한 플라스틱 제품
-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5.30-0000호

### ○ 변경사유

- 블라인드의 부분품이므로 제3925.30-0000호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613. 알까닭 등 완구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 (2025.3.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Electronic Arcade Basketball(GDP802)	품목분류3과-4502 (*18.08.31.)
2	완구 : 씯! 개조심	품목분류3과-4885 (*21.8.20.)
3	완구 : 씯! 개조심	품목분류3과-4888 (*21.8.20.)
4	티라노사우루스 롤렛게임	품목분류3과-720 (*21.01.28.)
5	알까닭	품목분류3과-4887 (*21.08.20.)

## ○ 물품설명

- 유희를 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완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4.90-2000호(①~③), 제9504.90-3000호(④,⑤)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700호(①~⑤)

## ○ 변경사유

-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제9503.00-3700호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614. 엘리베이터용 벨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 (2025.3.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Other article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Flat belt(CSB Belt) 32KN; GERMANY	품목분류2과-1027 (15.02.13.)

### ○ 물품설명

- 플라스틱과 철강제 로프가 결합된 엘리베이터용 벨트
-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1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2.10-2099호

### ○ 변경사유

- 철강제 로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므로 제7312.10-2099호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615. CALCIUM SILICON CORED WIR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 (2025.3.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CALCIUM SILICON CORED WIRE; CASI6030	품목분류4과-2996 (‘20.05.27)
2	Ferro Calcium Silicone Cored Wire	감정22701-203 (‘91.02.22)
3	Other magnesium articles; 마그네슘 코드 와이어(Magnesium cored wire); R.KOREA	품목분류2과-3526 (‘15.05.21)

## ○ 물품설명

- 철강제 튜브 내부에 탈황제 등 금속 알갱이를 충전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①,②), 제8104.90-9000호(③)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202.99-9000호(①,②), 제8104.30-2000호(③)

## ○ 변경사유

- 탈황제 등 금속 알갱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제7202.99-9000호(①,②), 제 8104.30-2000호(③)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616. 참깨 바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 (2025.3.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Sesame preparation; AMKI SESAME THINS; POLAND	품목분류2과-5144 (*19.07.10)
2	Sesame seed preparation; 594224 AMKI SESAME SNAPS; POLAND	품목분류2과-9898 (*15.12.21)
3	Sesame preparation; SESAME SNAPS; POLAND	품목분류2과-5452 (*15.07.16.)

### ○ 물품설명

- 설탕으로 덮인 참깨 바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8.19-9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704.90-9000호

### ○ 변경사유

- 설탕과자에 해당하므로 제1704.90-9000호에 분류(WCO 제74차 HS위원회 승인,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617. 캐러멜 팝콘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 (2025.3.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Popcorn preparation, puffed; CRACKER JACK CARAMEL COATED POPCORN & PEANUTS;	품목분류2과-14925 (*16.10.19)
2	Popcorn preparation, puffed; ZEBRA POPCORN; U.S.A	품목분류2과-7296 (*16.06.29)

## ○ 물품설명

- 설탕 또는 코코아로 덮인 팝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4.10-9000호(①, ②)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704.90-9000호(①), 제1806.90-3010호(②)

## ○ 변경사유

- 설탕과자 또는 초콜릿(코코아)을 함유한 조제식품에 해당하므로 제1704.90-9000호(①), 제1806.90-3010호(②)에 분류(WCO 제74차 HS위원회 승인,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618. 냉동한 미성숙 대두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 (2025.3.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Leguminous Vegetables, frozen; BOILED WHOLE GREEN SOYA BEAN	품목분류2과-3588 (‘24.05.07.)

### ○ 물품설명

- 냉동으로 미성숙 대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710.29-0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201.90-9000호

### ○ 변경사유

- 대두에 해당하므로 제1201.90-9000호에 분류(WCO 제73차 HS위원회 승인,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619. Women's jac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 (2025.3.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 of heading 59.03; Women's jacket; PR.CHNA	품목분류4과-4707 (18.10.02)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피복 합성섬유 걸감과 파일 편물 안감으로 만든 여성용 의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113.00-1000호

##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102.30-1000호

## ○ 변경사유

-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 자켓(등)이므로 제6102.30-1000호에 분류(WCO 제74차 HS위원회 승인,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620.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 (2025.3.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COVER GLASS; A2C17876600	품목분류4과-9609 (20.12.24)

○ 물품설명

- 자동차 계기판 디스플레이용 윈도우 커버글라스
-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007.19-1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07.11-1000호

○ 변경사유

- 차량용 강화안전유리이므로 제7007.11-1000호에 분류(WCO 제74차 HS위원회 승인,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17호, 2025. 3. 25.)

### ◇ 개정이유 ◇

- 수출환경 변화 대응과 반도체, 조선 등 첨단·핵심산업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 및 보세공장 운영 효율성 제고
  -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보세공장이 보다 많은 자율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및 자율관리 업무범위 확대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보세사 채용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의 열람권한을 세관에 제공한 우수 보세공장
  - 물류 공급망 간 신속한 화물 이동 지원, 불편한 검사절차 개선, 잉여물품 구분관리 간소화를 통해 물류 원활화 및 비용·부담 경감

### ◇ 주요내용 ◇

- 자율관리보세공장 등 우수업체의 자율관리 업무범위 확대
  - 연구·시험에 필요한 원재료·시제품 등이 연구개발부서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 장소 확대(§29의2①)
  - 보안문제로 열람권한 제공이 어려운 K방산업체 등도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36①4)
  - 제조·가공 작업 대비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승인 받은 보수작업과 품목·작업방법이 동일한 보수작업에 대해 승인 없이 보수작업 허용(§25①5·6, §37①12)
- 보세공장 물류 원활화 및 비용·부담 경감
  - 단일보세공장\*과 보관창고의 거리제한 완화(15→30km)로 보세공장·창고 증설 및 세관신고 없는 신속한 화물 이동 지원(§7①,③)
    - \* 동일 기업의 근접한 2개 이상 보세공장에 대해 동일한 물품관리체계로 통합관리 가능
  - 보세공장 간 원재료·제품 등 이동 시 반출입신고를 겸한 보세운송신고의 자동수리 조건을 완화\*하여 보세공장 간 물류 원활화 지원(§30①,③)
    - \* 반출입 횟수와 상관없이, 관련 법규 준수도 우수 업체에게 보세운송 특례 제공
  - 장외작업으로 생산한 물품과 잉여물품을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통관하는 경우 운영인 편의에 따라 원보세공장 또는 장외작업장 관할세관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검사 선별 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 절감(§22⑥)
  - 내·외국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잉여물품에 대해 설계 또는 혼용비율 손모양에 따른 재고관리 허용으로 잉여물품 구분관리 비용 절감 및 부담 해소(§33①,⑫)
- 기타 보세공장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정비
  -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연임 허용(§6의2④)
  - 보세공장 특허 갱신 신청 시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갱신도 통합하여 신청 가능하도록 신설(§10①)
  - 보세공장(장외작업장 포함) 소유차량으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을 보세운송 신고자로 등록하기 위한 서식 신설(§22⑫, §24⑩, §38⑤, 별지 제19호의2서식)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허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공장이 이 고시 시행 후 특허를 갱신할 때에는 제7조 제1항 및 제35조의3 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용례) 제30조 제1항·제3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개선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 ■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0호, 2025.3.25.)

2024년 9월 6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mm 이상이고 폭이 600mm 이상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완제품

○ 관세품목분류 : 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스테인리스 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 후 생산된 Black Plate 제품

③ HSK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제품 중 두께가 8mm 이하이면서, 폭이 2,000mm 미만인 제품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스창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나. STX 저펜 (STX Japan Corporation) 다. 베스트 윈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라. 장쑤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21.62
	2. 그 밖의 공급자	

라. 부과기간 : 2025. 3. 25. ~ 2025. 7. 24.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2월 5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http://www.moef.go.kr))/법령/훈령·고시/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

## 입법예고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계획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63호, 2024.12.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4.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규칙명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63호, 2024.12.4.)

#### 2.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0조제2항제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제2호 개정\*['25.2.28.(시행일 4.1.)] 취지 반영
  - \* (내용)외국항행선박 등이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신청시 해당 용도로 급유한 사실을 증빙하는 내용 포함
-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3. 주요 개정내용

-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서류 구체화(별표 1)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3조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포함
    - \* ①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또는 ②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부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부표) ('25.3.21. 시행규칙 개정)
- 관세환급 제도 운영 관련 명확화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간이정액환급률표 미계기 품목에 대한 환급방법 명확

화(제31조)

-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요건 명확화(제71조)
-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 통지의 효력을 적용받는 환급 대상 수출물품 명확화(제122조)
- 국내에서 수리한 물품의 환급수출형태부호 명확화(별표 2)

□ 인용 고시\* 명칭 및 조문 변경 반영(제4·57·61조)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등

4. 시행일자 : 2025. 0. 00.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신근호 사무관(042-481-7875)  
방대원 주무관(042-481-7873)
- 제출기한 : 2025. 4. 15.
- 제출방법
  - 전자메일 : deawonbang@korea.kr
  - 팩스 : 042-481-786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계획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5호, 2024.10.0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5.4.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규칙명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5호, '24.10.1.)

### 2. 개정사유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적용 범위 명확화
- 일시수출입 특수차량의 신고인 확대를 통한 신고 편의 개선

### 3. 주요 개정내용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계약국 차량 적용 범위 명확화(제2조 제1항 제1호)
  - 협약\*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반출입하는 차량 적용 범위를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명확하게 규정
    -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 계약국자동차라 함은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후략)
- 일시수출입 특수차량 신고인 추가 및 조문 재정비(제2조, 제5조, 제22조)
  - 신고인을 관세사·통관취급법인 등까지 확대\*
    - \* (현행)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만 가능
  -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 혼란 방지
- 일시수입 특수차량 내륙 운송 물품 적용 범위 명확화(제2조 제2항)
  - 일시수입 특수차량의 내륙 운송 가능 물품을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4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
    -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4호

- 관세 등 징수 대상 변경(제18조)
  - 신고인 확대에 따라 징수 대상을 신고인 ⇒ 납세의무자로 변경
  
-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 신고 항목 추가(별지 제1호서식)
  - 적재된 물품의 화주 및 사업자번호 항목 추가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시행일자 : 2025. 0. 00.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담당자 : 조현상 사무관(042-481-7851)  
          김가영 주무관(042-481-7815)
- 제출기한 : 2025. 4. 18.
- 제출방법 : 이메일(customs000da@korea.kr), 팩스(042-481-7819)

# 논문모집

##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투고 방법

이메일 승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원고 분량

20매 내외

###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